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238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4나4997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23891 판결

전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송경준

변론 종결 2024. 3. 5.

판결 선고 2024. 4. 16.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5,488,840원 및 그 중 122,952,891원에 대하여 2023. 6. 13.부터 2023. 11. 1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3.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10. 접수 8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C은행에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27,000,000원, 보증기한 2023. 2. 24.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운영자금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는 C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23. 1. 25.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12.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에 122,952,8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등을 위한 비용으로 1,896,809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A가 부담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639,140원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3. 1.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3. 1. 10. 접수 823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591,859,450원, 밀양시 D 시가 45,504,305원 합계 637,363,755원 상당이었던 사실,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48,905,829원으로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C 은행	127,500,000	원고의 보증부대출을 포함한 대출원금
E	540,000,000	갑 제5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근저당권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70,972,699	갑 제7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가압류권자
소상공인 진흥공단	39,583,400	
경남신용보증재단	38,990,000	
C 은행	23,766,337	
F	8,093,393	
합계	848,905,8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밀양시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125,488,8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22,952,8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2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11. 18.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그 무렵 피고 A는 C은행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1. 18. G 주식회사에 밀양시 H 소재 토지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회사 대표이사 I의 아버지이자 위 회사 사내이사였던 피고 A가 위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하여 2020. 1. 13. 피고 A와 사이에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2020. 5. 31.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A가 위 채무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나머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 A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피고 A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최지경

별지